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, 구동축전기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(법률 제19685호, 2023. 8. 16. 공포, 2025. 2. 17. 시행)됨에 따라,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구동축전기 식별번호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호		자 동 차 제 작 중		
자 동 차 의 표 시	제 원 관 리 (신 고)번 호		차 대 번 호	
	차 종		원 동 기 형 식	
	구 동 축 전 지 제원관리번호		구 동 축 전 지 식 별 번 호	
	차 명(형 식)		연식(모델연도)	
	총 중 량		승 차 정 원	
	최 대 적 재 량		배기량(기통수)	
	색 상		원동기 마력	
	길이 · 너비 · 높이		제동장치에 석면 사용 여부	☐ 사용 ☐ 사용 안 함
제작연월일		년 월 일	등록번호판의 규 격	× (mm)
최초 양도연월일		년 월 일	공 급 가 액 (부가세 제외)	원
양 수 인	성 명 (명 칭)		주민(법인)등록 번호	
	주 소			
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			☐ 직접 신청 ☐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제3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·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			
제 작 자 또 는 양 도 인	업 체 명			
	대 표 자	(서명 또는 인)		
	사업자등록번호			
	소 재 지			
비고	※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반품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. ※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“핵심장치등”의 경우에 구동축전지의 팩 단위로 기재(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)합니다.			